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하혜영·임준배

요약

- 01 I. 서론
- 02 II. 생활인구 제도의 도입 현황
- 09 III. 일본의 관계인구 제도 현황
- 14 IV.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18 V. 결론

□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됨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됨
- 생활인구의 제도화를 위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정부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3대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포함됨

- 대표적인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고향올래(GO郷 ALL來)” 사업이 있으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생활인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생활인구의 합리적 활용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생활인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명확한 산정 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체류인구의 측정방식 개선이 요구됨
- 생활인구의 도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류형 생활인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입법 설계가 요구됨

I.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이미 인구감소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2020년 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4년 연속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천133만 명이며, 전년 대비 11만 명이 감소하였다. 인구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 역시 증가 추세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2천601만 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천531만 명(49.31%) 보다 많다.¹⁾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와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²⁾

이러한 지역위기 속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19일에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국회에서는 2022년 6월 10일에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3년 2월 기준 지방의 소멸위험지수³⁾를 보면,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⁴⁾ 시·군·구의 52%를 차지했으며, 특히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이 51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처럼 지속적인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만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결국, 상주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체류 및 유동인구 등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다.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생활인구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관계인구 제도를 검토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최종 검색일: 2024.2.2.)(<<https://jumin.mois.go.kr/>>)

2) 하혜영·김예성,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NARS 정책·입법보고서』 제85호, 국회의원입법조사처, 2021.

3)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의 비율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이하(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면, 그 지역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 대상은 226개 시·군·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서 228개이다.

5) 이상호·이나경,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2023.

II. 생활인구 제도의 도입 현황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

지금까지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⁶⁾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⁷⁾ 지방소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주(상주)인구의 개념에 집착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섬(zero-sum) 게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간 인구 빼앗기 경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⁸⁾

우리보다 일찍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관계인구란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은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가운데 영역에 속한다. 정주하지 않고도 지방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 우리나라 역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란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을 도입하였다.

생활인구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¹⁰⁾ 이러한 생활인구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다.

2. 생활인구의 법적 근거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다(제2조제2호).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지원 규정도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6) 등록인구(登録人口)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인구이며, 상주인구(常住人口)는 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늘 거주하는 인구인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주인구(定住人口)도 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인구를 말한다. 그리고 체류인구(滯留人口)는 객지에 가서 머무르는 인구이며, 유동인구(流動人口)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지역을 오가는 사람이고, 관계인구(關係人口)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진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하혜영·류영아,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1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김동영·이중섭·송용호,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2020, p.125.

8) 전대욱·김필두·이대연,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120.

9) 민현정·김병진,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의 시사점과 과제 :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관점에서」, 『광주전남정책연구』 제26호, 광주전남연구원, 2022, p.152.

1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2023.5.17.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제15조제2항). 그리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2022년 12월 27일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생활인구의 요건으로 체류인구의 선정 기준과 외국인등록인구의 선정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23년 5월 18일 제정·시행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에 생활인구의 요건, 산정 내용, 산정 주기, 산정결과의 공포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관련 조례에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27일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신설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의 청년·중장년 정착지원,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에도 생활인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2023년 12월 27일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시 인구정책사업에 ‘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 정착 유도 지원’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 지정·설치 관련 규정도 두었다.¹²⁾

특히, 전북 남원시는 2023년 12월 26일에 전국 최초로 별도의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남원사랑시민제도”¹³⁾를 운영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제시했으며, 생활인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도 두었다.

11)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관광사업·관광객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1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19조(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 지정·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 유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3) “남원사랑시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남원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남원사랑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3. 생활인구의 개념 및 산정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생활인구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둘째,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셋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2호).

그림 1 | 생활인구의 구성 및 요건

생활인구	1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
	2	체류인구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3	외국인등록인구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자(외국인 예외)를 말한다.¹⁴⁾ 둘째, 체류하는 자는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¹⁵⁾ 셋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¹⁶⁾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6조¹⁷⁾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결국,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더불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부는 생활인구 산정방식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확대를 지원하기

1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5)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재외동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위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제3조). 생활인구의 산정 대상은 인구감소지역¹⁸⁾인데,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도 산정할 수는 있다(제4조). 생활인구는 1개월을 주기로 한다(제6조).

그리고 지역별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의 산정방식은 [표 1]과 같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1]에 생활인구 현황 산정표가 있고, [별지 2]에는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 산정표가 있다. [별지 2]를 보면, 체류인구의 경우 체류일수별(1일~31일) 인원, 내·외국인, 성별, 연령을 표기해야 한다.

[표 1]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및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 산정표

(1)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1])												
지역	생활인구	인원	성별		연령							
			남	여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00군	계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단위: 명)

(2)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2])													
지역	체류 일수	인원	내·외국인		성별		연령						
			내국인	외국인	남	여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00군	계												
	1일												
	2일												
	...												
	31일												

(단위: 명)

※ 한 달을 기준으로 측정된 체류일수별 체류한 사람의 수임

4. 시범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에 7개의 인구감소지역(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24년에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8)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21.10월 최초 지정)되는데, 전국에 89개 지역이 있다.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4-15호)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3개), 대구 (3개), 인천 (2개), 경기 (2개), 강원 (12개), 충북 (6개), 충남 (9개), 전북 (10개), 전남 (16개), 경북 (15개), 경남 (11개)다. 이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과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일부 변경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의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을 참조할 수 있다.

생활인구를 산정·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월별 생활인구를 성별·연령별·체류일수별로 산정할 계획이다.

다음 [표 2]는 7개 시범지역의 생활인구 규모(2023년 4월~6월 기준)를 산정한 결과이다.¹⁹⁾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7개 시범지역의 생활인구 규모는 [표 2]와 같다. 산정 결과를 보면,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다. 7개 시범지역 중 2023년 6월 기준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 보령시로 52만 7천여명이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4.3배 많았다. 그리고 충북 단양군의 경우에는 생활인구가 26만 9천여명인데, 등록인구는 약 2만 8천명 이고 체류인구는 약 24만 1천명으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8.6배가 많게 나타났다.²⁰⁾ 지역별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①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②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③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④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⑤ 통학유형(경남 거창군)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표 2] 생활인구 규모(7개 시범지역, 2023년 4월~6월 기준)

(단위: 천명)

시범지역	생활인구 (C=A+B)	인구 구성		비율 (B/A)	유형
		등록인구(A)	체류인구(B)		
충북 단양군	269.7	28.0	241.7	8.6	관광
충남 보령시	527.8	99.6	428.2	4.3	
강원 철원군	219.5	42.7	176.8	4.1	군인
전북 고창군	242.2	53.4	188.8	3.5	외국인
전남 영암군	218.7	60.0	158.7	2.6	통근
경북 영천시	347.5	103.6	243.9	2.4	
경남 거창군	184.3	61.0	123.3	2.0	통학

※ 주: 정렬 순서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의 내림차순임

※ 자료: 통계청·행정안전부, 『시범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2024.1.

5. 정부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

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

1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2024.1.2.

20) 통계청·행정안전부, 『시범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2024.1.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²¹⁾ 이에 따라, 2023년 12월에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2~’26년)」을 수립하였고, 시행계획은 ’23년 계획부터 수립해 진행 중이다. 이 계획에는 비전·목표, 추진 기반 및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가 있다.²²⁾ 3대 전략을 보면, 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②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③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있다. [표 3]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전략 중에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관련 내용으로, 해당 전략에는 4개 추진과제가 있다.

[표 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전략의 추진과제 및 실천과제

추진과제	실천과제	세부 내용
생활인구 제도 확립	① 생활인구 산정·분석	• 시·군 시범 산정·공포→ 전체 인구감소지역 확대 • 생활인구 유형 분석 등
	② 생활인구 활성화	• 정보 민간개방,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 각종 제도 활용, 재정지원, 특고세(고향올래, 로컬브랜딩 등),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등
	③ 관계인구(가칭) 도입 및 연계	• 관계인구 개념 등 제도화 추진, 관계 및 생활인구 연계 강화 등
지역 이주 및 체류 활성화	① 청장년 인구 유입 촉진	• 청년마을 만들기,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귀어·귀촌지원
	② 농어촌 방문·체류 활성화	• 농촌 관계인구 형성지원, 어촌체험, 산촌활성화 지원, 고향올래 사업지원, 농촌유학 지원, 로컬100(지역별 대표 문화자원) 홍보 등
	③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방문형 답례품 발굴, 관계인구 활용, 지정기부제 도입 등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① 자주 오래 머무는 지역	•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 디지털 관광주민증, 농촌 관광콘텐츠 개발·확산 지원, 고령·장애인 관광지원 등
	②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 로컬브랜딩, 지역관광자원 개발, 테마형 관광벨트, 접경지 체류 여행,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① 지역특화 비자발급 유연화	• 지역특화비자,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전환 활용 등
	② 일손해결형 외국인력 유치	•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숙련기능인력 전환신청 개선, 고용한도 상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제공 등

※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2023.12, pp.43~50에서 저자 정리

첫 번째 과제인 “생활인구 제도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는 ① 생활인구 산정·분석, ② 생활인구 활성화, ③ 관계인구(가칭) 도입 및 연계이다. 두 번째, “지역 이주 및 체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① 청장년 인구 유입 촉진, ② 농어촌 방문·체류 활성화, ③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있다. 세 번째,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실천과제는 ① 자주 오래 머무는 지역 만들기, ②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이다. 네 번째,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을 위한 실천과제에는 ① 지역특화 비자발급 유연화, ② 일손해결형 외국인력 유치가 포함되어 있다.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근거가 있다.

22) 관계부처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2023.12.

나.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 : 고향올래 정책을 중심으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²³⁾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5대 과제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전국단위로 확산하고자 한다.

고향올래 5대 사업으로, ① 두 지역 살아보기, ②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③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④ 청년 복합공간 조성, ⑤ 워케이션(Worcation)²⁴⁾이 있으며, 그 외 '자율과제' 분야가 있다. 고향올래 사업비는 총 200억 원(특교세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이다. 공모 방식을 통해 2023년 8월 10일에 최종 선정된 사업별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²⁵⁾

표 4 | 2023년 고향올래,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선정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선정지역
두 지역 살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여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 (방식) 여가, 휴양, 체험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 체험 프로그램, 주민 교류 등 지원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총 4개)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서울거주 초·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기간(6개월이상) 전학,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 체험 • (방식) 유학기간 동안 거주할 시설 조성비(유학마을 조성 등) 지원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총 3개)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생활 등 단기(2~3개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교류 지원 및 지역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 (방식) 빈집이나 농어촌체험관 등의 유휴공간을 개조한 주거환경 조성 	제주(1개)
청년 복합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청년층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 추진 • (방식) 청년층의 거주 공간과 창업 인큐베이팅, 구직 상담, 편의공간 등을 동일 장소에 조성하여 사용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총 4개)
워케이션 (Wor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방식 • (방식) 기업 워케이션 참가자가 근무할 오피스 시설을 조성하고, 여유시간에 참가 가능한 지역 특화체험 프로그램 마련·제공 	부산 해운대, 울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총 6개)
자율과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층의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거주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지역탐방, 취·창업) 등을 지원 	강원 정선, 충남 청양, 경북 구미(총 3개)

※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최종 21개 지자체 선정」, 2023.8.2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올래(GO鄕 ALL來)'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2023.3.29. 재정리.

23)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인천)동구, 동두천시, 포천시 총 7개 지방자치단체만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24) 워케이션(Worc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이다.

2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최종 21개 지자체 선정」, 2023.8.20.

Ⅲ. 일본의 관계인구 제도 현황

1. 도입 배경

일본은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을 제정하고,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2014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책목표·시책의 기본적 방향 등을 정리한 「제1기 마을·일자리·사람 종합전략」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마을·일자리·사람 종합전략」은 ①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 ② 젊은 세대의 근로·결혼·육아 희망의 실현, ③ 지역의 특성에 맞춘 지역과제 해결의 3가지 시점에서 수립되었다.²⁶⁾ 그럼에도 도쿄도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은 현저하였고, 이에 지방으로의 이주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 타카하시 히로유키(高橋博之)는 그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타베루 통신’의 기적』에서 교류인구와 정주민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 “관계인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관계인구(關係人口)” 용어를 사용하였다.²⁷⁾ 이후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관계인구’ 개념의 이론화에 관심을 가지던 메이지대(明治大) 오다기리 타쿠미(小田切徳美)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16년 말 “지금부터의 이주·교류 시책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이하 검토회)”를 조직하고 관계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관계인구 제도의 주요 내용

가. 관계인구의 개념

“관계인구(關係人口)”는 “특정한 지역에 계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는 자”를 뜻한다.²⁸⁾ 관계인구는 이주해 온 “정주민”과는 다르고,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와도 다르다.²⁹⁾ 관계인구가 일본 정부의 정책 개념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6년 검토회가 조직되고, 2018년 1월에 검토회 보고서 『「관계인구」의 창출을 향하여(「關係人口」の創出に向けて)』가 발표되면서 부터이다.³⁰⁾

해당 보고서는 인구의 저밀도화나 생산연령인구의 대폭 감소 등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교류시책을 더욱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외부인재를 지역에 유치할

26) 總務省, 「まち・ひと・しごと創生 総合戦略 -概要-」, 2014.

27) 이소영·김도형,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2021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p.11.

28) 内閣府, 『第2期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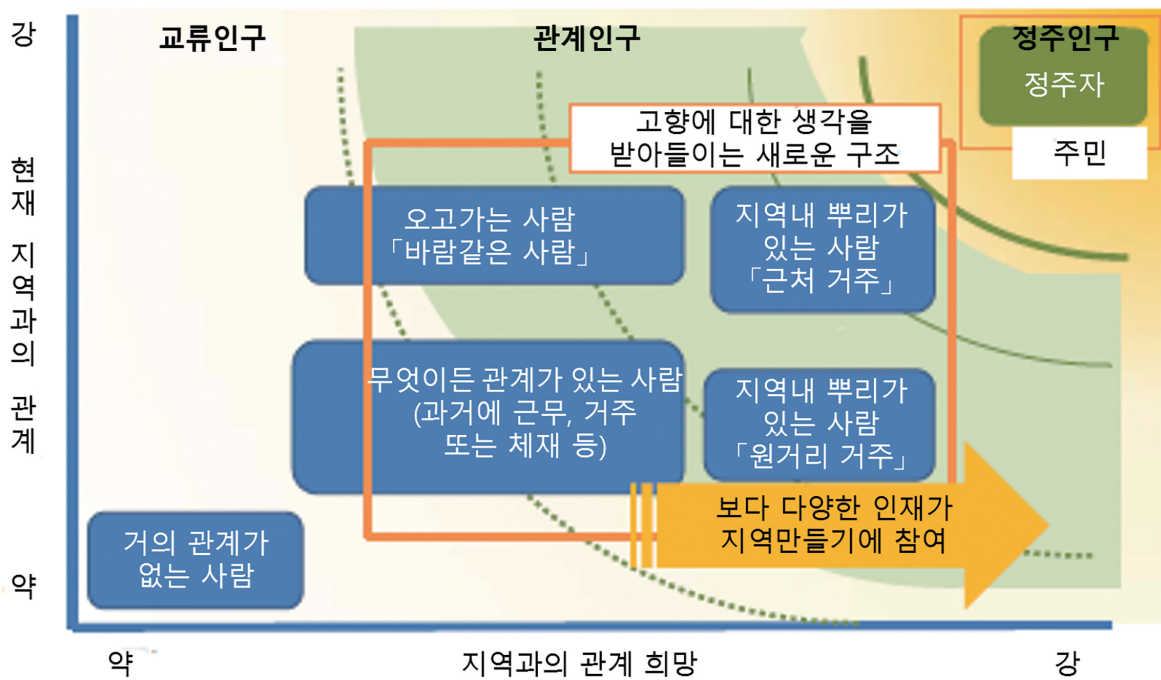
29) 總務省 關係人口 포털사이트, 「關係人口とは」(최종 검색일 2024. 2. 14.)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

30) 류영진, 「일본의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1권 제1호, 2020.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로부터의 이주·교류 등 인구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고향³¹⁾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이나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사람인 “관계인구”에 주목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관계인구의 범주는 다양한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고향’과의 관계에 따라 ‘현재 지역과의 관계(이주지향)’를 세로축, ‘지역과의 관계 희망(관계인구 지향)’을 가로축으로 하여 관계인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주지향과 관계인구 지향의 정도에 따라 ‘근거자(近居の者)’와 ‘원거자(遠居の者)’, ‘어떠한 관계가 있는 자(何らかの関わりがある者)’와 ‘바람같은 사람(風の人)’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림 2] 지역외의 인재와 지역의 관계



※ 자료: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関係人口」の創出に向けて』, 2018.를 번역함

관계인구를 크게 ‘팬(Fan) 베이스’와 ‘일 베이스’로 나누는 관점도 존재한다. 팬 베이스의 관계인구는 취미, 즐거움, 존재감, 지역에의 공헌을 위하여 지역과 관계를 맺는데,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식목 행사, 고향 납세, 축제·이벤트 참가 등이 있다. 일 베이스의 관계인구는 비즈니스, 무료 봉사, 업무 등을 위하여 지역과 관계를 맺는데,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사업, 부업, 텔레워크(Tele-work) 등이 있다.³²⁾

31) 보고서에서는 “고향(ふるさと)”을 ‘태어나서 자라난 지역, 부모님의 출신지 또는 근무한 적이 있는 지역이나 생애를 통해 다양한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다.
 32)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사이트, 「概要 - 関係人口について」, 2020. (최종 검색일 2024. 2. 14.)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index.html>>

나.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위한 정책의 방향

2019년 『제2기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이하 제2기 전략)이 수립되면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2기 전략의 방향성으로 기본목표 4개, 횡단적 목표 2개³³⁾가 제시되었는데, 기본목표 2 “지방과 연계를 구축하고,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든다”의 세부 목표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가 포함되었다.

【표 5】 제2기 전략 중 “관계인구” 관련 시책

기본목표 2	정책목표	주된 시책의 방향성
지방과 연계를 구축하고,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든다	지방으로의 이주·정착을 추진	(1) 지방이주의 추진 ① 지방이주의 추진 ② 지방이전의 추진 (2) 젊은이의 수학·취업을 통한 지방으로의 정착 추진 ① 지방대학의 진흥등을 통한 지역산업 담당자 육성 ② 고등학교의 기능강화 등
	지방과 연계를 구축	(1)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① 관계인구가 되는 계기 만들기·토양 만들기 ② 전입 지역의 대처 (2) 지방에의 자금흐름의 창출·확대

※ 자료: 内閣府, 『第2期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2019.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위해서는 “관계인구가 되는 계기·토양 만들기”와 “전입 지역의 대처”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계인구가 되는 계기·토양 만들기”를 위해서는 민간 지원 조직 육성, 농가숙박, 어린이의 농산어촌 체험, 지역유학 등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근 고용 매칭, 지방의 부업·겸업 등 다양한 형태로 매칭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2개 지역 거주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빈집 은행에 의한 매칭 등을 실시하고 기존 주택의 유통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입 지역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시·정·촌에서 이주 이외에 관계인구 상담창구를 설계하고, 전통행사에 대한 참가를 권유하는 등 정보 제공이나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상담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계인구 대책의 중요성·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관리자, 예를 들면 부시장 등이 CKO(Chief 關係人口 Officer) 등의 직함을 가지고 출선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계인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성과지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통일적인 지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2024년까지 관계인구의 창출·확대에 임하는

33) 기본목표는 ① 돈벌이가 되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과 연계를 구축하고, 지방으로의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든다, ③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룬다, ④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든다의 4가지이다. 그리고 횡단적 목표는 ①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추진한다, ②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힘으로 삼는다는 2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1,000개소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관계인구의 창출·확대에 실제로 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달성해야 할 목적을 명확히 한 후,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³⁴⁾

다.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위한 사업³⁵⁾

일본 내각부(内閣府)에서 관계인구의 창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교류촉진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1년 1억 6,000만 엔, 2022년 1억 엔에서 점점 줄어들어 2023년 예산은 8,000만 엔이 편성되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중간지원조직의 지역공헌모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관계인구가 지역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내발적인 발전 또는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주민과 지역의 중간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만든 모델의 자주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인 중간지원조직당 500만 엔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둘째, 관계인구 창출·확대 민관연계 전국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연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포럼·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면서, 협의회의 자립·자주를 위한 조직형태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3. 일본 관계인구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가. 관계인구 정책의 성과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방안의 실시 현황에 관한 2023년 내각관방 실시조사³⁶⁾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1,749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자체에서 수립한 제2기 전략³⁷⁾에 “관계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지자체는 1,285개소(73.5%)이고, “관계인구”를 명시하지는

34) 예를 들어, 지역내 중소기업 활력의 향상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업·겸업인재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 수를 성과지표로, 지역활동 담당자 부족으로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속적으로 지역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의 수·비용 등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35)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사이트, 「(令和5年度予算) 関係人口創出・拡大のための対流促進事業について」, 2023. (최종 검색일 2024. 2. 20.)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pdf/kankei_r5_budget.pdf>

36)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사이트, 「令和5年度 関係人口の創出・拡大に向けた取組状況調査(概要版)」, 2023. (최종 검색일 2024. 2. 20.)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pdf/r5kankeijinkou_tyousa.pdf>

37) 일본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마을·사람·일 창생법)」 제8조는 정부로 하여금 법 제2조의 마을·사람·일 창생의 기본개념에 따라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와 제10조는 각각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이 종합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않았으나 관계인구의 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지자체는 168개소(9.6%)이었다. 2022년에 관계인구 창출·확대와 관련된 대치를 시행한 지자체는 1,369개소(78.3%)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제2기 전략에서 목표로 하였던 1,000개소 목표를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인구 정책의 우수사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로, 정책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는 시각도 있다.³⁸⁾ 또한, 2023년 내각관방 실시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계인구를 창출·확대하는 시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과제(복수응답 가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원이 부족하다”에 1,078개소(62.0%),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맡는 지역주체가 적거나 존재하지 않는다”에 676개소(38.7%), “예산이 부족하다”에 593개소(33.9%), “관계인구와 지역을 연결하는 주체(중간지원조직)를 찾을 수 없다”에 452개소(25.8%), “무엇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에 291개소(16.6%)가 응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다.³⁹⁾

나. 시사점

관계인구는 단순히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한 교류인구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정주민구의 중간적 개념이라는 부분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관계인구의 개념 도입은 외부인과 정주민이라는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인구문제를 정주민구라는 양적 문제가 아닌 질적인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관계인구가 국가 정책의 주요 방침에 포함되어서, 이주민구의 증가나 지역 경제지표의 상승 등 양적 지표와 연결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역의 필요와 부합한다면 지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⁴⁰⁾

반면, 관계인구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정주민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주민구와 교류인구의 사이인 관계인구란 개념을 만들어서, 관계인구 창출을 통해 목표를 재설정해 기존 정책의 성과평가를 제고하려는 의도란 의견도 있다.⁴¹⁾ 또한, 관계인구의 인구적 의미에 매몰될 경우 관계인구 개념이 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개념의 새로운 확장이라기보다는, 정주민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인 한 갈래 정도로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기존의 정주민구를 서로 데려가기 위한 경쟁적 정책처럼, 관계인구도 지역 간의 서로 빼앗기 경쟁이 되어, 결과적으로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정책적으로는 정주민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⁴²⁾

38) 임화진,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 45., 건축공간연구원, 2022, p.38.

39)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사이트, 「(令和5年度予算) 関係人口創出・拡大のための対流促進事業について」, 2023. (최종 검색일 2024. 2. 20.)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pdf/kankei_r5_budget.pdf>

40) 류영진, 「일본의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1권 제1호, 2020.

41) 임화진,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 45., 건축공간연구원, 2022, p.38.

42) 류영진, 「일본의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1권 제1호, 2020.

IV.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1. 생활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활인구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활용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생활인구를 사용하는 안이 제기되어 왔다.⁴³⁾

첫째, 재정지원시 활용방안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⁴⁴⁾ 중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생활인구 수를 반영하는 방안이다.⁴⁵⁾ 주민등록 인구는 보통교부세를 배정받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배정지표에는 등록인구 외에 행정·재정상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정된 인구수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초수요액 뿐 아니라 보정수요액 등이 함께 사용되는데, ‘지역관리수요’에서 보정인구⁴⁶⁾와 유동인구⁴⁷⁾가 사용되고 있다.⁴⁸⁾ 따라서 생활인구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유지·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등록인구가 줄어도 체류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지방공공재의 사용 비용, 행정서비스의 제공 비용 등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인구 수를 보통교부세의 산정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시 생활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될 예정이다.⁴⁹⁾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이며,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다.⁵⁰⁾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기금 배분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따르면, 생활인구를 재정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시, 보통교부세 산정시,

43) 하혜영·류영아,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1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44)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공제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와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액의 97%를 합한 금액이며, 특별교부세는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3, pp.13-14).

45) 하혜영·류영아,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1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46) 보정인구에는 ①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수용자, ② 안전관리인력, ③ 외국인이 활용된다.

47) 유동인구는 집 혹은 거처하는 곳에서 직장·학교로 이동하는 인구로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차이를 말하며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를 활용한다.

48)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3, pp.71-72.

49)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2023.11.5.).

50) 류영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NARS 입법·정책』 Vol. 108, 국회입법조사처, 2022, p.30.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시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활인구의 활용 예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방교부세 산정,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지역계획 반영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제시하고 있다.⁵¹⁾

둘째, 생활인구를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 생활인프라 시설의 설치 기준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주인구 외에 관광·산업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의 도입을 고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⁵²⁾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인프라란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⁵³⁾

다만, 생활인구는 정주인구에 비해 생활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적거나, 혹은 정주인구의 생활인프라 수요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⁵⁴⁾ 또한 생활인구 중에서도 초단기 유동인구와 중·장기 체류자가 선호하는 생활인프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인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인구에는 체류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매년 인구수 변동이 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 증·감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생활인프라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추후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다.⁵⁵⁾

2. 생활인구 측정은 타당성이 있는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신설된 생활인구 제도가 목적대로 활용되려면, 생활인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생활인구에 포함된 “체류인구”의 측정 타당성⁵⁶⁾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체류인구의 측정을 보다 세분화(단기, 중장기)하고, 측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51) 관계부처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2023.12, p.44.

52) 이삼수 외,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24, pp. 109-110.

5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조 제1항

54) 이삼수 외,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24, p. 110.; 김필·전대욱·김해솔,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p.153.

55) 민현정·김병진,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의 시사점과 과제 :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관점에서」, 『광주전남 정책연구』 제26호, 2022.

56) 사회현상의 연구에서 측정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제6판, 서울: 법문사, 2021, p.519.).

생활인구 수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와 함께 체류인구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여기서 체류인구 수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추계된다.⁵⁷⁾ 즉 한 달에 1회, 3시간만 머물러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집계된다.

그런데, 현재 체류인구의 집계 방식이 매우 광범위하여, 체류인구가 인구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⁵⁸⁾ 체류기간을 세분하지 않으면, 한 지역에 하루 머문 사람도 1명, 한 달을 머문 사람도 1명으로 동일하게 집계되어, 체류인구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정확히 고려하기 쉽지 않다. 체류인구가 해당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체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시점에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체류자의 수만을 단순히 고려하기 보다는 ‘체류기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체류인구 관련 자료를 통해 이들의 특성, 즉 어디서, 언제, 왜 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만 생활인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체류인구의 광의적 개념으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체류하고 있는 인구로 정의하였다.⁵⁹⁾ 여기서 1박 이상 머무름이란 시간을 제시한 것은 지역과의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류인구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단기 체류인구는 1일에서 1개월 내의 기간 동안 지역에 머물면서 관광이나 방문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인구이며, 중장기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지를 떠나 1개월 이상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직장이나 업무,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인구로 규정하고 있다.⁶⁰⁾

현재 도입한 체류인구의 측정방식은 유동인구나 이동인구의 측정과 더 유사할 수 있다.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란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지역 활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늦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단순 유동인구나 이동인구와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으며, 지역연계성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가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단언하기

5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체류시간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을 선정한 근거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22.9월~’23.1월)이라고 밝히고 있다. 활동별로 보면,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수준(약 3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통계청, ‘20년). 지역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 관심지역(3시간52분) 방문자는 평균 3~4시간 정도 체류(한국관광공사, ‘22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2023.5.17.).

58) 송인방·조희정·이영재, 「새로운 인구 개념의 정책 적용 가능성과 과제: 일본의 관계인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2023.

59) 안소현 외,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20, p.39.

60) 김동영·이중섭·송용호,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2020. pp.16~17.

어렵다. 다만, 생활인구 제도가 지역 활력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인구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생활인구 정책들은 정주인구보다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류형 생활인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의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설계가 필요하다.⁶¹⁾ 이를 위해 생활인구의 개념을 보완하고,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유연거주제, 복수주소제(Second Address) 등 혁신적 인구관리 정책을 생활인구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인구는 어디까지나 관계와 목적 등에 기반한 유동인구일 뿐, 지역의 존폐를 판가름하는 중요 잣대는 정주인구 수에 달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활인구는 지역의 항시적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서 생활인구와 더불어 새롭게 “관계인구”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특정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관계인구의 확대를 유도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⁶²⁾ 제21대 국회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관계인구 개념을 포함하고, 생활인구와 함께 관계인구 확대 관련 규정을 둔 의원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⁶³⁾

참고로, 일본에서 시작한 관계인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긍정 및 부정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관계인구의 개념 도입은 지역의 인구문제를 정주인구라는 양적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인구는 근본적으로 지역 활력을 주는 기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주인구의 대체적 개념으로 도입했으나, 정주인구처럼 지역 간의 서로 빼앗기 경쟁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차원의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를 보다 확대하고자, 유연거주제, 복수주소제 등 현재의 단수(單數) 주소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⁶⁴⁾ 복수주소제는 개인에게

61) 이삼수 외,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24, p.131.; 민현정·김병진,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의 시사점과 과제 :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관점에서」, 『광주전남정책연구』 제26호, 광주전남연구원, 2022; 최민정·백일순, 「영도적 뗏에 걸린 지방소멸: 행정구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토지리학회지』 57권 2호, 2023.

62) 관계부처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2023.12, p.43.

63) 최형두 대표발의안(2023.4.3.)에서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안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64) 정영호, 「강원도에서 2개 주소지 제도를 도입하자 :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미 시행 중이다」, 『정책톡톡』 Vol.2023-76, 강원연구원, 2023 ; 윤영근·탁현우, 「주민수요 대응의 관점에서 본 복수주소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2021; 김용현·나중규, 「‘두 지역 살기’, 관계인구 창출과 균형발전의 촉매로 삼자」, 『대경 CEO BRIEFING』 제655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홍근석,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으로서의 복수주소제(Second Address) 도입 방안」,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주민등록지의 주소 이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개인의 직주(織主) 지역이 분리되고 생활영역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는 행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⁶⁵⁾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서 올해 1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활인구의 확대로서 세컨드 홈 활성화”이다. 세컨드 홈(second home) 활성화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⁶⁶⁾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현행 주민등록체계 상에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특히, 제2주소 등록의 방식, 적용 대상, 혜택과 의무 등 도입시 고려사항에 대한 각 영역별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막으려는 새로운 인구관리의 개념이다. 그동안 생활인구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까지 정했으나,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생활인구를 보완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생활인구 제도는 이제 막 시작의 단계라서, 현 시점에서 그 효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생활인구의 도입에 따라 지역의 활력 제고에 효과를 줄 것이란 기대와 더불어,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만 야기할 뿐,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써 효과를 주긴 어렵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인구 제도에서 단순 방문자인 체류인구의 수만을 늘리는 식의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렵다. 체류인구의 양적 증가보다는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니즈(needs)에 맞춘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생활인구에서 단순히 체류인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방문하는 체류인구가 그 지역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의 설계가 필요하다.

65) 윤영근·탁현우, 「주민수요 대응의 관점에서 본 복수주소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2021.

66) 관계부처합동,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 p.23.

참고문헌

- ////////////////////////////////////
- * 관계부처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2023.
 - * 관계부처합동,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
 - * 김동영·이중섭·송용호,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2020.
 - * 김용현·나중규, 「'두 지역 살기', 관계인구 창출과 균형발전의 촉매로 삼자」, 『대경 CEO BRIEFING』 제655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 김필·전대욱·김해솔,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제6판, 서울: 법문사, 2021.
 - * 류영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NARS 입법·정책』 Vol.108, 국회입법조사처, 2022.
 - * 류영진, 「일본의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제21권 제1호, 2020.
 - * 민현정·김병진,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의 시사점과 과제 :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관점에서」, 『광주전남정책연구』 제26호, 광주전남연구원, 2022.
 - * 송인방·조희정·이영재, 「새로운 인구 개념의 정책 적용 가능성과 과제: 일본의 관계인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2023.
 - * 안소현 외,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20.
 - * 윤영근·탁현우, 「주민수요 대응의 관점에서 본 복수주소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2021.
 - * 이상호·이나경,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2023.
 - * 이삼수 외,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2024.
 - * 이소영·김도형,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2021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 * 임화진,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45., 건축공간연구원, 2022.
 - * 전대욱·김필두·이대연,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 * 정영호, 「강원도에서 2개 주소지 제도를 도입하자 :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미 시행 중이다」, 『정책톡톡』 Vol.2023-76, 강원연구원, 2023.
 - * 최민정·백일순, 「영토적 뒷에 걸린 지방소멸: 행정구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토지리학회지』 57권 2호, 2023.

- * 통계청·행정안전부, 『시범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2024.1.
- * 하혜영·김예성,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NARS 정책·입법 보고서』 제8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 * 하혜영·류영아,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1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 * 홍근석,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으로서의 복수주소제(Second Address) 도입 방안」,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3.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2024.1.2.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2023.11.5.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올래(GO郷 ALL來) 사업 최종 21개 지자체 선정」, 2023.8.20.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2023.5.17.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올래(GO郷 ALL來)’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2023.3.29.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최종 검색일: 2024.2.2.)(https://jumin.mois.go.kr)
- *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사이트, 「概要 - 関係人口について」, 2020. (최종 검색일 2024. 2. 14.)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index.html)
- *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사이트, 「(令和5年度予算) 関係人口創出・拡大のための対流促進事業について」, 2023. (최종 검색일 2024. 2. 20.)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pdf/kankei_r5_budget.pdf)
- * 内閣官房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実現会議事務局 사이트, 「令和5年度 関係人口の創出・拡大に向けた取組状況調査(概要版)」, 2023. (최종 검색일 2024. 2. 20.)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ankei/pdf/r5kankeijinkou_tyousa.pdf)
- * 内閣府, 『第2期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2019.
- * 總務省, 「まち・ひと・しごと創生 総合戦略 -概要-」, 2014.
- * 總務省 関係人口 포털사이트, 「関係人口とは」(최종 검색일 2024. 2. 14.)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
- *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関係人口」の創出に向けて』, 2018.

R E P O R T · L I S T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315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2024.2.5	최은진
제314호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 - 홍수, 가뭄 등 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	2024.1.16.	김진수
제313호	법 집행 기능 회복을 위한 공무원행자 보호 입법 방안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 통제를 중심으로	2023.12.28.	이재영
제312호	미국의 정당방위 법제와 시사점	2023.12.28.	박소현
제311호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2023.12.27.	정용제
제310호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답변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의회를 중심으로 -	2023.12.21.	김태엽
제309호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실효적 일몰제도 정착 필요 -	2023.12.18.	황성필·박윤정
제308호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2023.12.12.	문심명
제307호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2023.11.20.	허민숙 박재연
제306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	2023.11.15.	이소영
제305호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	2023.11.14.	김도희·형혁규·김예경· 박명희·심성은
제304호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 -	2023.11.7.	구세주
제303호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2023.11.2.	이덕란
제302호	포털뉴스의 평가와 영향: 실증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2023.10.27.	최진응
제301호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2023.10.19.	김광현
제300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조건과 효과에 대한 검토	2023.8.10.	고원 정치발전 제도개선 T/F
제299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3.8.9.	유재국



NARS 현안분석 제316호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39-001615-14

ISSN 2586-565X

